

2000. 3. 16.

## 제정및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충주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 충주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 충주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총 무 위 원 회

# 제정 및 개정조례 안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2000.3. 9	2000.3.13	2000.3.15	2000.3.15	총무과장
충주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	"	"	"	세정과장
충주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	"	"	"	"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	"	"	"	회계과장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	"	"	환경미화과장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	"	"	"

## 2. 제안설명요지

### 가.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 1) 제안이유

- 충주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보화를 추진하여 다양한 주민의 정보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정비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 및 지역정보센터의 설치운영(자치단체내, 제3섹터 형식)
-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
  - 위원 : 위원장(부시장), 학계, 언론, 민간, 유관기관, 시의회, 관련실과장
  -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심의
  - 지역정보화촉진 시책의 추진실적 평가
- 지역정보화본부 설치(본부장 및 CIO : 총무과장)와 전산정보자료 관리, 정부표준화, 전산보안, 자료보호절차등을 마련
-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전산실운영조례, 충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는 폐지함.

## 나.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시세조례의 일부 내용을 법과 일치하도록 정리하여 지방세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부과·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보통세의 세목을 주행세의 신설로 8개 세목으로 함.
- 시세심의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는 삭제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5인 이하로 조정함.
- 2000년 1월 1일부터 등록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 적용에 있어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지방세감면과 관련된 관계법률의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의 조문정리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서민층의 주거인정을 위하여 임대사업자 기준완화 및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을 추진하여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감면조례의 일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감면확대**

- 재활용사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함에 있어 국가유공자인 중상이자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중상이자 개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면제,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함.
-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의 등록차량 뿐만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단, 국가유공자와 공동 등록시에 한함)하는 경우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함.

#### **○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확대**

- 문화재보호법 또는 도·지방문화재보호조례 등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등 문화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전액면제함.

#### **○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

-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경감하였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오히려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감면규정을 폐지하여 과세 전환토록 함.

- 서민층의 주거안정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의 기준 완화(5세대이상 을 ⇒ 2세대이상으로)
-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동안은 전액면제, 그 다음은 3년동안은 50% 경감”

## 라.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호 및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경지 매각시 실경작자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를 정하여 실경작자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를 정하여 실경작자 확인을 투명하고 명확히 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농경지 매각시 실경작자 확인을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농지원부를 첨부토록 함.

## 마.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환경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현행법령에 따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예방
- 감량 기기에 대한 수분함량기준(25~40% 미만)을 설정하여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함.
-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 기기의 설치규정 삭제
-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 운반차량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운반토록 함.

## 바.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의 개정('99. 8. 9)으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현행법령에 따라 개정하려고 함.

### 2) 주요골자

- 폐기물관리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 항 목 수 : 97개 항목
  - 과태료금액 : 5만원 ~ 1,000만원
- 음식물쓰래기처리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 항 목 수 : 5개 항목
  - 과태료금액 : 5만원 ~ 500만원
- 자원의절약 및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 항 목 수 : 30개 항목
  - 과태료금액 : 30만원 ~ 300만원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2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 산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 기반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책무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음.
- 이에 충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이며 조례안은 총 9장 37개 조문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 제1장은 목적과 용어에 대한 설명과 제2장에서는 기본계획수립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 제3장에는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설치도록 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제4장은 지역정보화 본부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
  - 제5장 및 제6장은 전산정보관리와 자료제공등에 관한 내용과 제7장은 컴퓨터 시스템운영에 대한 내용에 조문이 배열되어 있으며
  - 제8장 및 제9장은 보안관리와 정보화 교육의 내용에 대한 조문과 부칙에서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충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와 충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가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나.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지방세법이 '99. 12. 28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을 법과 일치되도록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시세심의위원회는 종전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과 각 분과위원회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던 것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정하였으며

- 주행세를 신설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의 세율로 정하고
- 매달 시장은 징수한 주행세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장은 송금 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 주행세액을 다시 우리시에 납입하는 것으로서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세목이라고 할 수 있음.
- 종전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등록하던 것으로 승용 자동차로 변경 등록됨에 따라 세부담이 가중되므로 자동차 과세를 단계별로 승용차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시·군세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되었음

#### **다. 충주시지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불균일 관세를 할 수 있음이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하는 지방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 시·군에 일괄통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는 것임

#### **라.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농경지 매각시 실경작자 확인을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지원부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실경작자 확인을 투명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 **마.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수수료징수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마련코자하는데 배경을 두고 있으며
  - 생활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 또는 전용봉투에 분리 배출하도록 하고
  -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월간 배출량에 따라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일선하는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여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99. 8. 9.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안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되어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전면개정 시행하려는 것임.

## **마.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99. 8. 9 개정됨에 따라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

## 4. 질의.답변요지

### 가.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 질의 : 본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되는 조례중 사용료 징수는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답변〉 제26조에 별표로 포함되어 있음. 관련법에 의해 일원화하는 전국공통 사항임.

▶ 질의 :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과 제정 근거는?

〈답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하며 행자부의 준칙에 의함.

▶ 질의 : 조례제정후 주민홍보 방법은?

〈답변〉 반회보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 하겠음.

▶ 질의 : 의회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될 경우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답변〉 제정될 경우 사전에 의장님과 협의해서 추진 하겠음.

▶ 질의 : 컴퓨터 시스템 운영시 운영 요원은?

〈답변〉 기존 공무원으로 운영 할 것임.

▶ 질의 : 정보센터 운영시 보유 장비의 성능은?

〈답변〉 현재는 문제가 없음. 향후 정비의 내구연한이 지난후에는 검토해야 함.

▶ 질의 : 제36조에 정보통신전문인력 양성에 따른 예산은?

<답변> 현재 확보되지 않았음.

## 나.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질의 : 주행세 신설을 제도 자체가 불합리한 것아닌지?

<답변> 년간 122억정도 예상되며 제도는 행자부의 준칙에 의함.

▶ 질의 : 주행세를 꼭 울산광역시에서 정수해야 하는지?

<답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한 중앙부처에 표준안임.

▶ 질의 : 자동차세율에 대하여 쉽게 예를 설명?

<답변> 2005년부터 적용되며 산타모의 경우 2005년까지는 현재와 같아 61,750원이며 2007년에는 390,000원 정도임.

## 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질의 :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감면중 형제, 자매 모두가 해당되는 것인가?

<답변> 형제, 자매에 한해서 1대에 한함.

▶ 질의 :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것은 입법취지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답변> 분가한 시점의 당해 분기만 해당됨.

## **라.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질의 : 농지법에는 수의계약의 경우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약 1만평방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면적으로는 과다하지 않은지?

<답변> 면적을 확대해서 범위를 넓이려는 것임. 5년이상 현재까지 경작자에게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취지임.

▶ 질의 : 제38조가 맞는지 제39조가 맞는지?

<답변> 제39조는 도 조례로서 제38조가 맞음.

▶ 질의 : 실경작은 않하고 임대인으로만 등록되어 있으며 실경작자는 따로있는 경우에는 본 제도가 무색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답변> 매년 임대계약을 하고 있으며 그럴 경우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음. 또한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발견사항이 없음.

## **마.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질의 : 감량의무 적용 대상은?

<답변> 일일평균 연급식이 100명이상인 식당등 별도 규정이 첨부되었음. 주로 음식점이 적용 대상임.

▶ 질의 : 주요골자에 보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감량기기의 설치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은 법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답변> 감량기기는 19대 설치하였으나 실용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거용기를 지원해서 시에서 수거할 계획임

▶ 질의 : 감량기기 설치 전·후의 차이점은?

<답변> 정확히 파악하지는 않았으나 설치된 곳에서 발효기등을 활용하고 감용기기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질의 : 사전예고 방법이 시보에만 게재해서 주민들은 알수가 없다고 보는데?

<답변> 시보와 각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 하였음..

▶ 질의 : 기존 조례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있는지?

<답변> 3개월간 이행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기간내 개선이 되고 있음.

▶ 질의 : 조례개정후 실천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답변>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

## 바.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질의 : 1회 용품을 사용치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는 영세업소를 볼 때 본 조례와 현실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데?

<답변> 원칙적으로 규제대상이 되고 있으며 적발보다는 홍보 및 제도를 통해서 줄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 질의 : 11개 항목에서 97개 항목으로 세분화된 주된 내용은?

<답변> 종전에는 경·중만 가려서 범법행위를 단정 하였으나 효율적인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세분화하고 있음.

▶ 질의 : 폐기물을 받는 곳은?

<답변> 건축폐기물은 타 지역으로 일반폐기물은 재활용은 분리하고 기타는 매립장을 활용하고 있음.

▶ 질의 : 쓰레기 버릴 곳을 만들어 주고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버릴 곳이 없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답변> 쓰레기 종류별로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100% 처리할 수 있는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며 각 분야별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

## 5. 심사결과

- 가.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 수정의결[별지1]
- 나.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의결[별지2]
- 라.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마.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바.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6. 기타

- 가.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1부
- 나.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라.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 마.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부
- 바.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별지 1]

##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6조의 제목중 “양성등”을 “양성”으로하고, 같은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수정안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36조(정보통신전문인력의 <u>양성등</u> ) (생략)  1. ~ 2. (생략)  3. <u>정보통신전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졸업후 특채</u>  4. <u>정보통신전문가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u>	제36조(정보통신전문인력의 <u>양성</u> )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삭제)</u>  4. <u>(삭제)</u>

[별지 2]

## 충주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중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를 삭제한다.

<수정안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삭제)